



목 포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(의사 보수교육 추가)

1. 관련근거

가. 「의료법」 제37조제3항 및 제4항

나.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제2조제1항 및 3항
다.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-258호(2025.1.24.)

라. 전라남도 식품의약품-2733(2024.2.3.)호

2.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>				
교육구분	의 과			치 과
	선임교육	보수교육		선임교육, 보수교육
교육기관	한국방사선의학재단	한국방사선의학재단	대한방사선사협회	대한영상치의학회
면허종별	의사, 방사선사	의사	방사선사	치과의사, 치과위생사
교육방법	실시간 온라인	실시간 온라인	동영상교육	(선임교육) 실시간 온라인 (보수교육) 동영상 교육
교육일정	1.19. ~12.18. (13회)	3.30~11.30. (5회)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추가편성 검토 예정	연중상시	(선임교육) 1.5. ~12.21. (13회) (보수교육) 연중 상시
- 선임교육: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(선임 전에 이수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) - 보수교육: 안전관리책임자 중 '22년 선임교육 이수자 ※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,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				

※ 의사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 교육기관 지정철회 신청으로 교육기관 지정이 철회됨에 따라 한국방사선 의학재단에서 실시

3.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교육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이외 세부 안내 사항 목포시보건소 홈페이지 - 참여마당 - 공지사항 참조

※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[별표2]

위반행위	과태료 금액(단위:만원)		
	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위반
타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50	75	100

끝.

목 포 시 장

수신자 목포시의사회, 관내 의료기관 178개소

주무관

김지희

의약관리팀장

박수란

보건위생과장

전결 2025. 2. 4.

박윤희

협조자

시행 보건위생과-2695

접수

우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, (산정동)

/ <http://www.mokpo.go.kr>

전화번호 061-270-8905

팩스번호 061-270-3597

/ jh2778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소중한 내 삶을 지키는 방법,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합시다!